

KBIZ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우] 0399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34(성산동) (성산동 642-4) www.kicic.or.kr
부장 장현정 상무이사 김영호 / 전화 02-336-3670 전송 02-336-3604 / jhj@kicic.or.kr

문서번호 방통협(관) 제618호

2020. 9. 14.

수 신 전 조합원

참 조 대표이사

제 목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수령 사업장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임금 감소)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

-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재고량 증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요건 충족)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기간 및 지원 종료후 1개월 간 고용유지)
 -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 지원내용
 - 기간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 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금액 : 임금감소분의 50% 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
* 1인당 월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1개월 단위로 지급
- 참여방법 : 공모사업으로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접수

3.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3개월 이상 지원금을 수령(예정)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3년) 유예하기로 하여 안내드립니다.

※ 동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kicic.or.kr>) 정보광장→공지사항

붙임 : 1.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리플렛 1부.

2.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1부. 끝.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주 대 철

